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5월 3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6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7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9년 6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'19년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정원 반영에 따른 조정 및 현장중심의 인력 배치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(안 제2조)
 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: 677명 → 699명 (증 22명)
 - 집행기관의 총수 : 665명 → 687명 (증 22명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 (변동없음)
-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(안 별표 3)
 - 총 계 : 677명 → 699명 (증 22명)
 - 정 무 직 계 : 1명 (변동없음)
 - 일 반 직 계 : 653명 → 674명 (증 21명)
 - 4급·4~5급 : 4명 (변동없음)
 - 5급 : 29명 (변동없음)

- 6급 이하 : 619명 → 640명 (증 21명)
- 전문경력관 : 1명 (변동없음)
- 연구 직 계 : 3명 (변동없음)
- 지 도 직 계 : 19명 → 20명 (증 1명)
- 별 정 직 계 : 1명 (변동없음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'19년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정원 반영과 현장중심의 인력 배치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 정원 677명에서 22명이 증가한 699명으로, 집행기관의 총수는 665명에서 22명이 증가한 687명이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을 보면, 일반직이 6급 이하 21명 증가하였고, 지도사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.
- 조례안 검토결과 2019년 승인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,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77명”을 “69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665명”을 “68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699	699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674	674				
4급	1	1				
4~5급	3	2		1		
5급	29	13	2	5	1	8
6급 이하	640	640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1				
연구직 계	3	3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3	3				
지도직 계	20	20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19	19				
별정직 계	1	1				
6급상당	1	1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평창군에 두 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 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<u>677명</u> 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665명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699명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687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